



중소기업  
기술보호 기술분쟁 법률비용 보상 정책보험  
지원사업

⇒ **사업목적**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「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」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

⇒ **지원대상** 가입시점 기준 유효한 특허권, 영업비밀(임치기술)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소재 중소기업

[지원 제외대상] 휴·폐업 중인 기업 및 유희·향락업,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

⇒ **지원내용** 보험상품 최초가입시 **보험료의 70% 정부지원**

기업당 연간 1회(1개 계약) 지원

정부지원 비율	최초가입	재가입(갱신)			
		1회	2회	3회	4회 이상
	70%	60%	50%	40%	30%

보험료 추가지원(최대 10%한도)



⇒ **보장대상** 가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기간 내 유효한 기술자료(특허권, 영업비밀(임치기술)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) 중 최대 3개

<b>특허권</b>	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	<b>영업비밀</b>	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임치를 한 영업비밀에 한함
<b>실용신안권</b>	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된 실용신안	<b>디자인권</b>	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된 디자인

⇒ **보장내용** 보험기간 내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(보험목적물)과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소요된 법률비용을 보장금액(보험금) 내에서 지급

## ⇒ 상품개요

구분	기본	특약(선택)
보장담보	피소대응(방어소송)	소송제기
보상하는 손해	보험에 가입된 기술자료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을 대응하기 위한 법률비용	보험에 가입된 기술자료에 대해 피보험자가 제기한 법률분쟁을 대응하기 위한 법률비용
보상한도(선택)*	3천만원	5천만원
보험기간(선택)	1년	3년
보험효력	가입 즉시	90일 이후
보험료	약 110~200만원 (5천만원/1년 기준, 산업별·매출별 상이)	약 150~250만원 (5천만원/1년 기준, 산업별·매출별 상이)
자기부담금**	10%	

\* 가입된 보상한도내 사고건수에 대한 제한 없음 \*\* 사고시 10% 제외한 보험금 지급

### 보상 주요내용

보상가능	보상불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내법원에 접수된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」, 「특허법」, 「실용신안법」, 「디자인보호법」에 의한 소송</li> <li>• 변호사선임비용, 기술자료 가치평가비용, 포렌식비용</li> <li>•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</li> <li>• 형사소송의 경우 최종판결이 "무죄"로 선고된 경우에만 한하여 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률상 분쟁의 원인인 사건이 보험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 법률비용</li> <li>• 기술자료의 권리기간이 경과된 이후 개시된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법률비용</li> <li>• 특허심판원에서 발생한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법률비용</li> <li>• 손해배상금(판결금액, 화해금), 벌금, 과태료, 패소시 상대방에게 지급할 법률비용</li> </ul>

\*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참고바랍니다.

### 보험료 할인/할증

무사고 할인/할증	5년 이내 소송이력 無 ▶ 10% 할인
	5년 이내 소송이력 有 ▶ 소송 결과에 따른 할증
단체할인	30개 업체 이상 단체가입시 ▶ 10% 할인
장기계약할인	보험기간 3년 가입시 ▶ 연요율의 250%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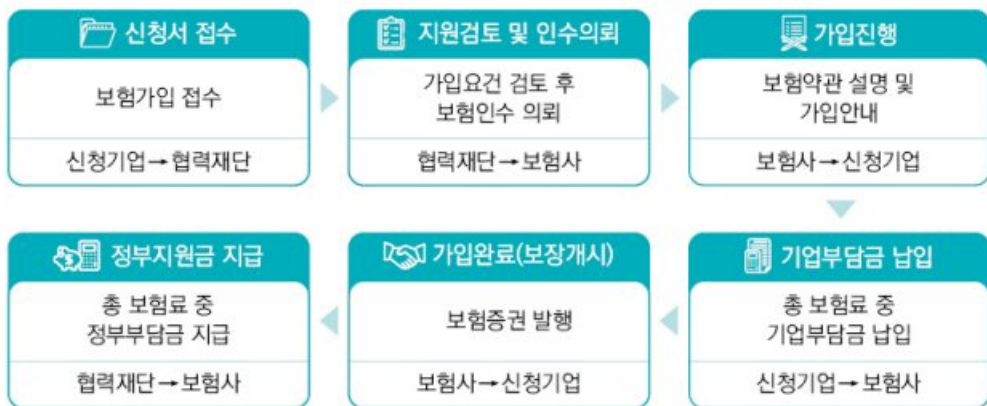
## ⇒ 신청기간 및 방법

- **신청기간**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지원
- **신청방법** 기술보호올타리 홈페이지([www.ultari.go.kr](http://www.ultari.go.kr))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 
보내실 곳 [insurance@win-win.or.kr](mailto:insurance@win-win.or.kr)



기술보호올타리

## ⇒ 가입절차



## ⇒ 신청서류

- 1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험 지원 신청서
- 2 보험가입 목적물 사본 1부  
\*특허증(출원중인 특허 불가), 기술자료임치증, 실용신안등록증, 디자인등록증
- 3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1부
- 4 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1부
- 5 개인 또는 법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
- 6 보험료 추가할인을 위한 증명서(해당기업에 한함) 사본 1부



# 중소기업 기술분쟁, 이제는 보험으로 대비한다!





기술개발의 완성은 **보호**입니다.



지원사업 문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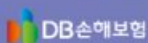
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

02-368-8795, insurance@win-win.or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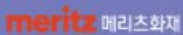
보험가입 및 세부 보장내용 문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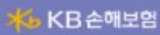
02-6733-890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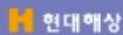
070-7308-2087



02-6464-3277



02-6900-3028



1877-3006